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임원 선거 공고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제41조와 임원선거규약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임원의 정수

가. 신임임원(교원및직원 2년, 학생 1년 임기)

- 이사 7인 이내

나. 임기 개시일 : 2017.01.01.부터

2. 선거인의 자격

- 정관 제41조 연합회 대의원인 자.

- 정관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원선거규약 제9조의 자격(연합회 대의원 3인의 추천)을 득한 자.

3. 선거일 : 2016년 12월 13일(화)(예정)

- 2016년 연합회 제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 선거일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될 수 있음

4. 후보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6년 12월 2일(금) 18시까지(직접 또는 우편접수)

- 등록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 후보추천서, 조합확인서, 취임승낙서 등, 각1부

2.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원본 2부

- 등록장소 : 연합회 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제3호동 2층 201호)

5. 보다 자세한 내역은 연합회 홈페이지(www.univco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 11. 15.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붙임 1. 신입 임원후보 등록 신청서

임원 후보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사진 (3cm*4cm)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된 조합			
연락처		전화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본적		
	현주소		
주요경력사항			

본인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이사)로 입후보합니다.

2016. . .

임원후보 : (서명)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 1. 후보추천서, 조합확인서, 취임승낙서, 후보제안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2부

※ 위 제출서류는 임원선출에 따른 등기업무의 효율을 위해 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임원후보 추천서

후 보 추 천 서

임원후보자			
성 명	(인)	전화번호	
소속된 조합		전자우편	

추천 대의원 1.			
성 명	(인)	전화번호	
소속된 조합		전자우편	

추천 대의원 2.			
성 명	(인)	전화번호	
소속된 조합		전자우편	

추천 대의원 3.			
성 명	(인)	전화번호	
소속된 조합		전자우편	

위 본인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이 연합회 임원후보를 추천합니다.

2016. .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조합 확인서

(임원 입후보자 자격확인서)

성 명 :

조합가입일 : 년 월 일

주 소 :

위 후보자가 우리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인)

2016년 12월 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임원 취임승낙서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주소 :
소속조합 :

본인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이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승낙인 : (인감도장)

2016년 12월 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귀중

붙임 5. 후보제안서(이력서)

성 명		
소속조합		
경 력		
출마동기		
활동계획		

※ 연합회 임원후보로서 간략한 소개와 활동계획 등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총회에
서 공람될 계획입니다.

붙임 6. 임원명부

가. 임기중 (2014.12.10 ~ 2016. 12월 31일)

구 분	성 명	소 속
이 사	양 재 영	경상대생협
	최 상 진	경희대생협
	조 선 희	국민대생협
	이 재 욱	동국대생협
	민 시 기	서울과기대생협
	양 성 현	숭실대생협
	양 준 호	인천대생협
	박 창 훈	인천대생협
	현 창 열	전남대생협
	박 재 현	전북대생협
	김 재 성	조선대생협
	이 상 호	한국기술교육대생협
	정 진 성	한국외대생협
		(이상 13명)
감 사	조 용 희	국민대생협
	김 준 년	인하대생협

나. 임기만료

성 명	소 속
이 한 주	강원대생협
여 윤 기	경북대생협
장 덕 희	경희대생협
지 상 윤	상지대생협
최 홍 규	충북대생협
	(이상 5명)
	선출임원 총 7명이내

붙임 7. 연합회 제6기 대의원 명부

NO	조합명	성명	NO	조합명	성명
1	강릉원주대생활협동조합	김태완	31	동국대생활협동조합	정이교
2		김재석	32		유재춘
3	강원대생활협동조합	강신수	33	동아대생활협동조합	김창래
4		이한주	34		이준영
5		윤영순	35		장기화
6	경북대생활협동조합	여윤기	36	방송통신대생활협동조합	임영희
7		최정분	37		이미복
8		한성훈	38		박경태
9	경상대생활협동조합	양재영	39	부경대생활협동조합	정미림
10		구한별	40		이순희
11		이종찬	41		이윤실
12		양주영	42		안종현
13	경희대생활협동조합	최상진	43	상지대생활협동조합	김마용
14		김진해	44		방정균
15		김민화	45		우영균
16		심현철	46		지상윤
17		오준석	47		신민경
18		이재훈	48		신현용
19	국민대생활협동조합	김상범	49	서울과학기술대생활협동조합	민시기
20		조선희	50		김보연
21		조용희	51		김미연
22		한민희	52		권영운
23	군산대생활협동조합	박병천	53	승실대생활협동조합	양성현
24		임채홍	54		오미혜
25		남윤희	55		김진아
26	금오공과대생활협동조합	신병엽	56	안동대생활협동조합	신기철
27		황영희	57		안애경
28		최시혁	58		이순형
29		박현정	59		인천대생활협동조합
30	동국대생활협동조합	이재욱	60	박창훈	

NO	조합명	성명	NO	조합명	성명	
61	인천대생활협동조합	김선애	91	충북대생활협동조합	홍지은	
62		양창규	92	한국기술교육대생활협동조합	이상호	
63		강단비	93		임재난	
64		이정은	94		한윤희	
65	인하대생활협동조합	김준년	95		권세영	
66		민은경	96	한국외국어대생활협동조합	이윤석	
67		김병삼	97		이송근	
68	전남대생활협동조합	최정기	98	정진성	강희경	
69		위은하	99			
70		현창열	100			김태동
71		나종수	101			
72	전북대생활협동조합	박재현	102	한국해양대생활협동조합	이은정	
73		김기홍	103			강성훈
74		김순례	104			
75		이영숙				이상 104명
76	제주대생활협동조합	김희철				
77		이태주				
78		황우화				
79	조선대생활협동조합	박수형				
80		김재성				
81		양용승				
82	창원대생활협동조합	강연경				
83		조보배				
84	충남대생활협동조합	이상호				
85		방숙자				
86		어보경				
87	충북대생활협동조합	최홍규				
88		한원구				
89		오정택				
90		홍진선				

붙임 8. 임원선거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1조에서 정한 연합회의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임원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연합회의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출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연합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외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합회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대의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및 간사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연합회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의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공고가 지정한 기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중복된 대의원의 동의는 무효로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회기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추천 금지) 대의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9조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1항에 의한 투표는 이사와 감사로 구분하여 각 임원의 직위별 정수 이내로 각각 기표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가 이사장후보로 등록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제1항에 의해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감사선거,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20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1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대의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5. 기타 유무효의 판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25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